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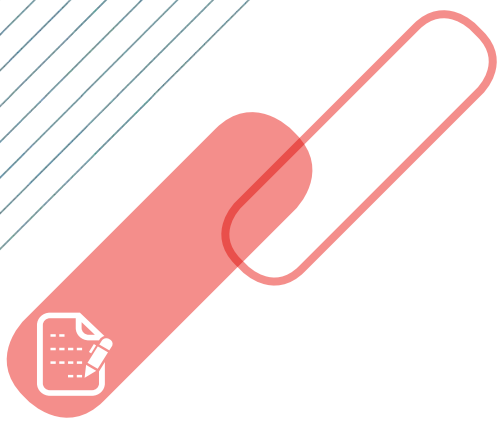

제1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2018년 2월 12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18년 7월 13일까지 150여 일간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 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2. 11. ~ 2017. 5. 12.	2017. 4. 1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3. 20. ~ 2017. 6. 8.	2017. 5. 9.	2017. 3. 10.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2. 12. ~ 2018. 7. 13.	2018. 6. 13.	
2018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4. 13. ~ 2018. 7. 13.	2018. 6. 13.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과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언론인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이력	추천단체	비고
위원장	안영률	법무법인 KCL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윤원구	(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원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자유한국당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바른미래당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이장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남영진	(전)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자협회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 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추천권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바른정당과의 신설합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심의위원을 해촉하고,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위촉함.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재조치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사진 : (왼쪽부터) 김정범 위원, 김춘식 위원, 김민전 위원, 남영진 위원, 안영률 심의위원장, 윤원구 부위원장, 이완규 위원, 소순창 위원, 이장희 위원,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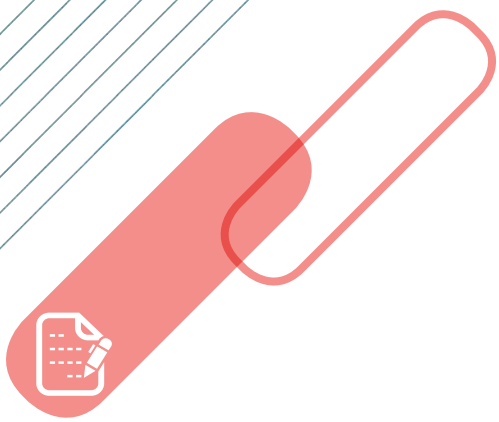

제2장
심의·의결절차

1. 자체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하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해당 언론사에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해당 기사,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한편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를 결정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 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의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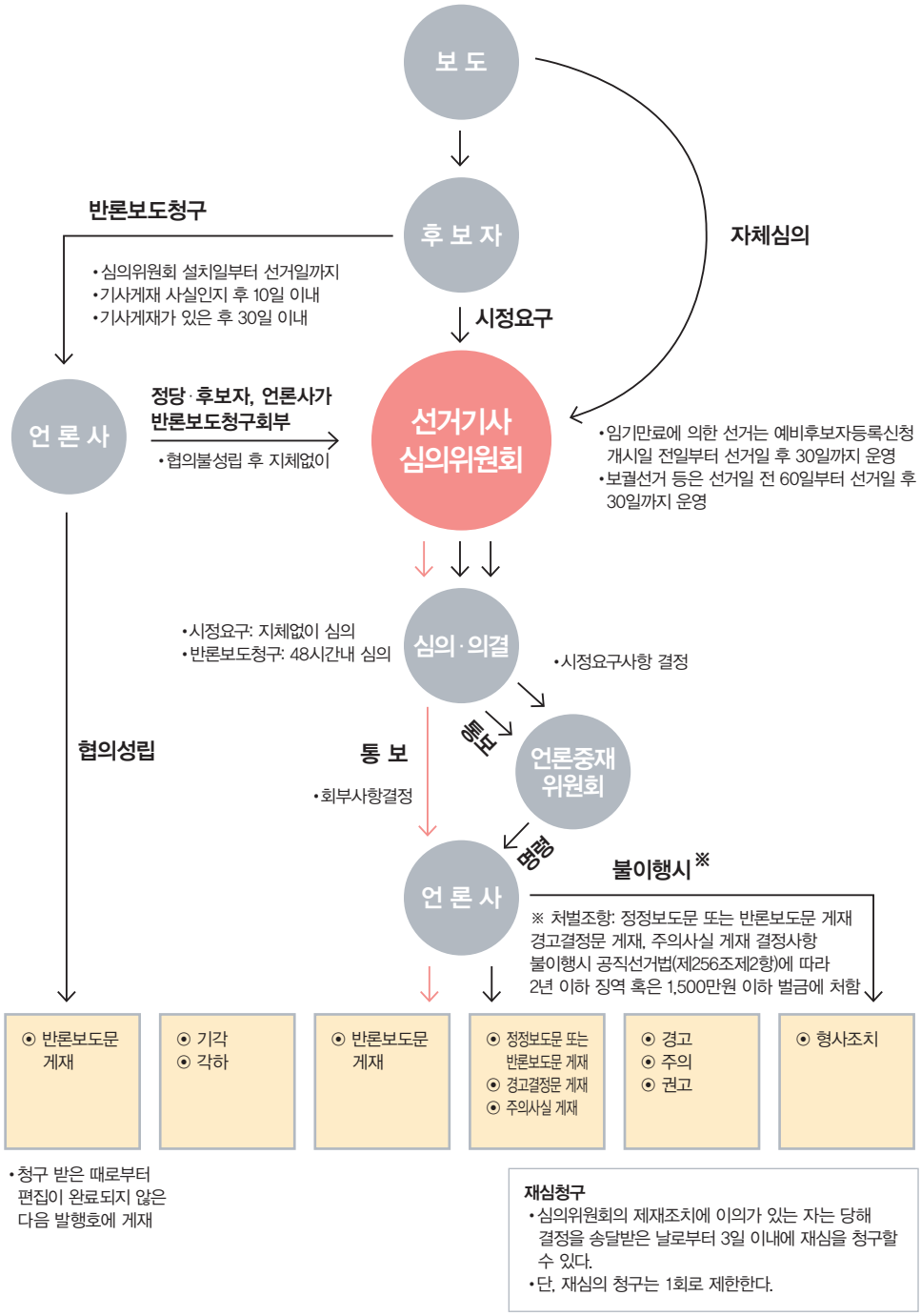
보 도
후 보 자
반론보도청구
•심의위원회 설치일부터 선거일까지
•기사게재 사실인지 후 10일 이내
•기사게재가 있은 후 30일 이내
자체심의
시정요구
언 론 사
정당·후보자,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회부
•협의불성립 후 지체없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시정요구: 지체없이 심의
•반론보도청구: 48시간내 심의
심의·의결
•시정요구사항 결정
협의성립
통 보
•회부사항결정
불복
언론중재
위원회
결정
언 론 사
불이행시※
※ 처벌조항: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결정사항 불이행시 공직선거법(제25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반론보도문 게재
⊙ 기각
⊙ 각하
⊙ 반론보도문 게재
⊙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 경고결정문 게재
⊙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형사조치
•청구 받은 때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게재
재심청구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